

전자무역과 eUCP에 관한 연구

박 성 철*

-
- I. 서론
 - II. eUCP의 주요내용과 유의점
 - 1. eUCP의 적용
 - 2.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 3. 전자기록의 발행일과 선적일의 인정
 - 4. 전자기록의 보안과 은행의 면책
 - III. 주요 전자결제시스템과 eUCP와의 관계
 - 1. Bolero Net과 eUCP
 - 2. 인터넷 네고와 eUCP
 - 3. TradeCard와 eUCP
 - IV. 결론
-

I. 序論

근래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의 새로운 상관습이 태동함에 따라서 무역실무 현장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¹⁾의 도입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TradeCard시스템이나 Bolero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본격적인 상용화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상거래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무역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무역환경은 급기야 전자결제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전자

* 배화여자대학 사이버무역과 교수.

1) 전자결제는 국제거래에서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국내거래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어음이 아닌 전자결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거래에서의 전자결제는 국제거래에서의 전자결제보다 훨씬 시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의 과제는 특정 국가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자무역은 향후 글로벌 마켓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도하개발계획(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실행에 따라 세계가 단일시장으로서 발전하는데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국제상업회의소는 2000년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미래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the 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에서 전자무역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으며, 추가적인 논의에서 현행 UCP 500과 종이신용장(paper-based credits)²⁾에서의 전자적 자료의 처리를 수용할 수 있는 가교(bridge)를 개발할 필요성을 확인했다³⁾. 이러한 취지하에서 eUCP는 기존의 UCP의 개정(amendment)형태가 아닌 보칙(supplement)⁴⁾의 형태로 개발되게 되었다. 보칙의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면에서 기존의 UCP보다 열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기존의 UCP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UCP가 규율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eUCP는 UCP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eUCP는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가 있는 경우에 2002년 4월1일부터 이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아직 전자적 제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은행뿐만 아니라 무역업계는 처음 적용되고 있는 eUCP에 대한 실무적용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실무현장의 실무가들에게 전자무역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에 있어서 eUCP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의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논자는 주

2) 여기서 종이신용장의 개념은 전자신용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용장이 종이서류 형태로 개설통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종이형태로 개설통지되는 신용장하에서도 전자적인 제시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UCP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ICC, eUCP(1.0), 2002. 04, p.6.

4) supplement를 '추록' '부칙'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보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추록은 '추가하여 기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칙은 법률 등의 끝머리에 부가해서 경과규정, 시행기일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칙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법률용어이다.

5) eUCP, art. e2

로 국제상업회의소의 eUCP원문 자료의 이용 및 전자결제관련 선행연구 논문과 저서를 참조하는 문헌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II. eUCP의 주요내용과 유의점

1. eUCP의 적용

(1) eUCP규정상의 적용범위와 UCP와의 관계

eUCP는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⁶⁾의 제시 및 전자 기록과 종이서류(paper documents)의 조합에 의한 제시에 적용되며⁷⁾, 종이서류의 제시만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eUCP신용장⁸⁾이 수익자로 하여금 전자기록에 의한 제시와 종이서류에 의한 제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수익자가 종이서류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면 UCP만이 적용되며, eUCP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⁹⁾. 또한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eUCP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거문언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의 UCP에서도 준거문언의 삽입을 적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기존의 UCP의 경우에는 그 동안 확실한 상관습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준거문언이 없는 경우에도 UCP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¹¹⁾. 그러나 아직 상관습으로 정착되지 못한 eUCP의

6)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작성, 생성, 송신,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자료로서 송신자의 명백한 신원과 포함된 자료의 명백한 출처, 그리고 그 자료가 완전하고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eUCP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eUCP.art.e3.b.)

7) eUCP, art. e1.

8) eUCP신용장이란 eUCP에 따른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신용장 자체가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9) eUCP, art.e2.

10) UCP 500, art. 1.

11) SWIFT시스템에 의한 신용장 통지의 경우에 신용장이 UCP 500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용장은 UCP 5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ICC은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신용장 형식은 UCP에 따르는 것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고 승인된 하나의 관습이 되어 왔으므로 신용장이 UCP 500을 따르는지 여부에 대한 원 SWIFT신용장통지에서 침묵이 U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Gary Collyer,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eUCP의 조항을 입안함에 있어서 기존에 UCP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UCP 500 제1조에서 적용과 관련하여 '신용장의 본문에 삽입된 경우'(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eUCP 제1조에서도 'eUCP에 따른다는 명시이 있는 경우'(where the Credit indicates that is subject to eUCP)라고 한정하면서 비교적 구속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where'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상관습의 변화과정을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전자적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하에서 eUCP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실무적으로나 또는 당사자간에 분쟁의 발생시 참조할 수 있는 준거 규칙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CP는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버전(version)의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²⁾. 만약에 버전의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장이 발행된 일자에 시행되고 있는 버전에 따르게 되며, 어떠한 조건변경이 eUCP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건변경 일자에 시행되고 있는 버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이러한 규정은 향후 eUCP의 빈번한 개정이 있을 경우에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UCP와는 달리 전자무역환경은 급속한 기술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UCP의 준거문언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UCP의 준거문언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UCP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UCP와 UCP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eUCP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즉 eUCP는 UCP의 특별법적 지위에 놓아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종이서류의 제시와 비교하여 전자기록의 제시는 특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UCP의 고려없이 eUCP만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CP 500, ICC Publishing S.A., 1999, R.248; 대한상공회의소 설명회 자료, 2002, 4.8. pp.9-10.

12) 준거문언의 예: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 1.0

13) eUCP, art. e1.

14) eUCP, art.e2

(2) eUCP와 신용장의 형태

eUCP는 기본적으로 신용장거래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이 어떠한 형태로 개설 통지되는가 하는 문제는 eUCP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신용장이 종이형태로 개설·통지되었는지 아니면 전자신용장(e-L/C; electronic L/C)이든지 관계없이 전자기록의 제시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신용장이란 개념을 신용장의 개설에서부터 대금의 상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전자적 방식에 의해 개설 통지되는 신용장으로 한정하고자 한다¹⁵⁾. 즉, 전자신용장과 전자적 제시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eUCP에서도 신용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전자적 제시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입장을 간접적으로 취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전신신용장, SWIFT신용장 등이 모두 전자신용장의 범주에 포함되며, 인터넷과 같은 개방시스템하에서 개설통지되는 신용장이 개발되어진다면 인터넷신용장도 전자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다. eUCP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신용장 자체의 전자적 발행이나 통지문제는 이미 기존의 UCP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¹⁶⁾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기록에 의한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제시는 화환신용장보다 보증신용장(Stand-by L/C)이 훨씬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화환서류의 제시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제시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¹⁷⁾. ISP 98에서도 전자적 제시에 대한 규정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¹⁸⁾, 보증신용장에서 전자적 제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eUCP의 적용이 보다 적절하게 될 수

15) 박석재, 사이버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00,8, p.242에서는 신용장의 개설, 통지가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자식신용장으로 볼 수 있지만 완전히 EDI화된 신용장을 전자신용장으로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래야만이 관련개념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전자무역의 개념으로 “무역의 거래과정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식 방식으로 이행되어질 때 이러한 무역을 전자무역이라 한다”라고 정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신신용장, SWIFT신용장이라고 하는 용어도 개설·통지방법을 기준으로 부르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16) UCP 500, art.11.

17) James G.Barnes & James E. Byrn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The International Lawyer*, Vol.35, No 1, 2001, Spring, p.26.

18) ISP 98, art.1.09,c;Electronic Presentation

있을 것이다.

2.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1) 제시의 방법

전자기록은 종이서류와는 달리 제시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제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eUCP에서는 구체적인 제시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제시하는 방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속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자가 어떠한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시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⁹⁾. 즉, 기술중립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eUCP는 수익자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은행이 면책되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와 관련한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CP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종이서류의 제시장소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기록은 독립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시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²⁰⁾. 여기에서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는 전자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전자기록을 송부할 전자주소이며,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 수신이 가능한 주소이면 어떠한 형태의 전자적 주소도 상관없다. 이러한 전자기록의 제시는 전자기록의 생산자들에 의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한 전자주소로 제시되면 충분하고 종이서류와는 달리 동시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전자적 제시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종이서류의 제시장소도 명시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UCP와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UCP하에서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종이서류의 제시장소가 없어도 되지만²¹⁾ eUCP는 모든 신용장의 경우에 종이서류의 제시장소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자적 제시인 경우에 제시장소의 지정이 없는

19) eUCP. version 1.0, ICC pub No.500/3, p.7.

20) eUCP, art. e5a

21) UCP500, art.42.

자유매입신용장이 실무적으로 이용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²²⁾, 종이서류의 제시장소는 전자기록의 제시장소와 동일한 은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전자기록의 제시는 종이서류의 제시와는 달리 원본과 사본의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전자적 제시를 전제하고 있는 UCP 또는 eUCP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기록의 제시에 의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이러한 전자기록의 제시는 종이서류의 제시와 비교해 볼 때 제시를 위한 영업시간대는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이서류인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제시해야 하지만 전자기록의 제시인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시간과는 관계없이 은행의 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시간대에는 언제든지 제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의 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드백 받음으로써 재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수신 확인

전자기록이 '수신되었다'(received)는 것은 어떠한 전자기록이 특정시스템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식으로 적합한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을 의미한다²⁴⁾. 따라서 전자적 제시는 지정된 전자주소로 전자기록을 송신한 사실 자체만으로 제시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전자기록의 송신 후에 제시가 이루어진 은행 앞으로 제시완료의 사실을 통지(advice of completeness)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가 수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²⁵⁾. 이러한 완료의 통지도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익자로 하여금 제시가 완성된 후에 은행 앞으로 완료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수익자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전자기록의 제시기관이 각각 독자적으로 해당 은행 앞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22) 전자기록의 제시기관이 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장소의 지정이 없는 자유매입신용장은 전자제시의 경우에는 이용상에 한계가 있다.

23) eUCP, art. e8.

24) eUCP, e3.a.V.

25) eUCP, art.e5.c.

경우에 수익자는 이러한 모든 전자기록의 제시기관들을 확인하고 사후관리하여 언제 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은행에 제시 완료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기록의 제시 또는 종이문서의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시가 완성된 후에 은행에 통지하는 통지내용에는 관련 eUCP신용장을 반드시 밝히고(identify) 있어야 한다²⁶⁾. 이를 밝히지 않은 제시나 통지는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²⁷⁾,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에 그 은행의 시스템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며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를 위한 최종기일은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이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되기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전자기록이 제시완료의 통지(advice of completeness)인 경우에는 원격통신이나 종이 서류에 의해서 제시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은행의 시스템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송부된 경우에 적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²⁸⁾. 즉, 은행의 시스템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없는 시간대에 송부된 원격통신이나 종이서류에 의한 완료의 통지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초안에는 없었던 것을 마지막 최종안에서 삽입된 것으로 은행의 시스템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경우에 수익자가 제시가 이루어졌다는 완료의 통지를 전자적으로 송신하려고 하다가 수신은행측의 시스템 문제로 송신 못한 경우에 대체적인 방법, 즉, 원격통신이나 종이문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기록 자체의 제시를 원격통신이나 종이문서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수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또 한가지 있다. 전자기록이나 종이 서류의 제시가 있는 후일지라도 완료의 통지가 수신은행에 의해서 수신되지 않으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반드시 제시 후에 완료의 통지를 하고는 그러한 통지를 수신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확인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26) 제시단계에 제시된 전자기록과 eUCP신용장의 상호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이 관련된 eUCP신용장을 표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면 상업송장이 제시되면 상업송장상에는 어느 eUCP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상업송장인지 참조번호로서 eUCP신용장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7) eUCP, art.e5c.,d.

28) eUCP, art.e5.e.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은행측의 접수통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²⁹⁾도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자가 제시은행에 실무적인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기록의 제시형식은 eUCP신용장에서 명시하여야 하지만 전자기록의 형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은 명시된 형식이 없거나 또는 형식이 지정되지 않아서 자유형식으로 제시된 전자기록을 개설은행 등이 심사할 수 없는 경우(inability)에 이를 거절의 사유로 할 수 없다³¹⁾. 이러한 것은 은행측의 사유로 제시된 서류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불리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한 배려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에 의한 전자기록의 제시는 완료의 통지로 제시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제시된 전자기록의 인증(authentic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인증되지 않은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³²⁾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통신기록이 인증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이 송부된 후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무결성), 송신자가 확인 가능해야 하고(확인가능성), 송신자가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의견상 전자기록의 송신일자와 같은 본질적인 아닌(extraneous)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³³⁾. 그러나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에서는 협의의 의미의 인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즉, 인증이란 “전자서명 검증기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기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³⁴⁾를 말한다. 인증은 전자기록의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정한 수익자에 의해서 전자기록의 제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상으로는 공인인증기관³⁵⁾이 인증한 전자서명³⁶⁾³⁷⁾을 이용하여야 한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에 대

29) 최석범, eUCP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회, 2002, 5.25, p.103.

30) eUCP, art.e4.

31) eUCP, art.e6.c.; inability를 대한상공회의소 설명회 자료 등에서 무능력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심사할 수 없는 상태인 ‘불능’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2) eUCP, art.e5.f.

33) C.Reed, Legally binding Documents: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The International Lawyer*, Spring, 2001, p. 90.

34) 우리나라 전자서명법 제1조.6

35) 현재 우리나라의 최상위 인증기관은 한국정보보호센터이며 인증기관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는 증권전자인인증센터,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금융정보인증센터 등이 있다(최준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2001.2. p.236).

한 정의조항을 eUCP에서도 두고 있으나 이 용어가 실제로 구체적인 조항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증을 위해서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증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의 전자서명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이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서만을 별도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인감도장에만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³⁸⁾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전자서명에 의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전자기록의 심사와 거절통지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에 대해서는 eUCP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UCP의 규정³⁹⁾에 따라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문면상(on their face)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하면 된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한다는 것은 서류가 외관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할 것을 확인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⁴⁰⁾. 여기서 '문면상'(on its face)이라는 용어를 전자기록의 자료내용의 심사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eUCP에서 규정⁴¹⁾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면 된다. 일치성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국제은행표준관습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은행표준관습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전자기록의 일치성과 관련한 국제은행표준관습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자기록의 내용은 종이서류의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전환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이서류의 일치성 판단기준이나 전자기록의 일치성 판단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전자신용장 또는 종이신용장에서 서류의 요

36)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37) 전자서명이란 전자기록의 당사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자기록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 전자기록의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이행한 어떠한 자료처리를 말한다(eUCP, art.e3).

38) 최준선, 전계논문, p.218.

39) UCP 500, art.13.a.

40) 강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 검토, 무역상무연구, 2000.2, p.500.

41) eUCP, art. e3.a.

권은 전자기록의 '외견상'⁴²⁾(on its face) 일치성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종이서류인 경우에 자구 하나 하나를 대조하여 일치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듯이 전자기록의 외견상 일치성도 정보시스템상에 나타나는 표시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대조하여 일치성을 판단하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eUCP에서는 지정은행(매입은행 등)이 전자기록을 발송하였다는 것은 전자기록의 외견상 진정성(apparent authenticity)을 검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⁴³⁾ 개설은행의 전자기록의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외견상 진정성을 검사한 전자기록을 아무런 심사없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개설은행은 전자기록의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정은행 등이 전자기록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ignifies)는 규정은 지정은행 등의 전자기록 심사기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설은행의 전자기록 심사기준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정은행 등은 전자기록의 송부 당시에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한 후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게 되면 전자기록의 심사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송부과정의 전자기록의 변조나 개조 등에 의한 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송부되어져 온 전자기록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송부과정의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여 전자기록을 심사하되, 이 경우에도 외견상 진정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심사의무를 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전자기록의 제시형식이 표준화되고 정형화되어지면 기계에 의한 전자기록의 자동심사가 가능해지겠지만 은행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은행 담당자가 하게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초안⁴⁴⁾에서는 은행의 전자기록의 심사기간을 UCP와는 달리 5영업일을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이는 기존의 UCP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7영업일과 큰 차이가 없으며, 종이서류의 제시와 전자기록의 제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한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심사를 위해서 기존의 UC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은행은 7영업일을 향유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의 개시는

42)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문면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외견상'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eUCP, art. e6.b.

44) ICC Document 470/941 rev2.

완료통지를 수신한 다음 은행영업일부터 개시한다. 이것은 은행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제시나 완료통지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⁴⁵⁾. 심사를 위해서 심사대상이 되는 전자기록은 외부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hyper link)된 것과 외부시스템의 참조사항(reference)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심사시점에 그러한 외부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일치(discrepancy)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 조항은 전자기록의 제시에 이용한 시스템상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은행은 면책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은행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실제로 이행단계에서 은행측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접근불가능한지, 아니면, 수익자가 제시에 이용한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결국 이 조항은 전자기록 자체가 아닌 시스템상의 오류까지도 은행이 불일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UCP에서 오직 서류의 불일치를 지급거절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⁴⁷⁾. 또한 개설은행 등은 전자기록을 포함하는 제시의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 거절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통지가 주어진 당사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제시자에게 사전에 반송되지 않은 모든 종이 문서를 반송할 수 있으나, 전자기록은 아무런 책임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⁴⁸⁾. 이 조항은 또 앞에서 수익자의 은행에 대한 완료의 통지는 도달을 확인했을 때 즉, 수신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에 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통지 후 일방적으로 30일을 기다렸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종이 서류의 반송 및 전자기록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은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한 수익자는 거래 전 과정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5) eUCP, e7.a

46) eUCP, art.e6.a.

47) UCP하에서는 서류불일치가 아닌 어떠한 업무이행상의 차이점은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ICC공식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 사례에서 2 Mailing을 요구한 신용장에서 1 Mailing으로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 불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ICC Document 470/TA.529 2002, 3. p.43.)

48) eUCP, art.e7.b.

3. 전자기록의 발행일과 선적일의 인정

종이 운송서류의 경우에 서류의 발행일과 실제 선적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선하증권의 발행일과 선적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이 선하증권상에 부기되어 선적일의 증거로 제시된다. 이러한 원리를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규정했다. 즉, 전자기록이 별도의 선적일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는 선적일자로 간주된다⁴⁹⁾. 그런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종이서류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eUCP에서는 전자기록상에 특정의 발행일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송신된 것으로 보이는 일자'(appears to have been sent)가 발행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⁵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선적일자는 신용장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조건(condition)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지급거절(unpaid)을 당할 수 있는 요소(factor)이다. 그런데 그러한 선적일자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하나의 기준이 '송신된 것으로 보이는 일자'와 같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선적일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송신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신일자를 송신일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⁵¹⁾ 선적일자의 해석을 은행의 편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다. 즉, 수신일자는 은행의 정보시스템에 전자기록이 입력되는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은행이 전자기록의 심사과정에 당해 전자기록상에 선적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전자기록의 발송일자를 추적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시스템 설계시에 전자기록의 발송일자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발송기관의 시스템상에 들어있는 송신기록을 믿을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발송기관의 시스템을 확인하여 선적일자를 확인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전자기록의 제시의 경우에는 전자기록상에 반드시 선적

49) eUCP, art, e10.

50) eUCP, art, e9.

51) eUCP, art, e9.

일자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4. 전자기록의 보안과 은행의 면책

은행은 전자기록의 수신(receipt)이나 인증(authentication) 그리고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신된 전자기록이 외관상 명백한(apparent) 경우에 송신자의 신원이나 정보의 출처, 그리고 전자기록의 완전성과 무변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⁵²⁾. 즉, 은행은 은행의 통상적인 전자자료처리방식에 의해서 수신된 전자기록이 외관상 훼손되지 않고 명백한 경우에 전자거래의 진정성과 무결성⁵³⁾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은행은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기록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apperas to have been corrupted)에는 제시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고, 재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⁵⁴⁾. 이와 같은 재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지정은행은 반드시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 통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재제시가 되지 않으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⁵⁵⁾. 이와 같은 전자기록의 변형이 매입은행에서 매입된 후 개설은행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제시자인 수익자에게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해서 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기록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정은행, 개설은행 등은 재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may request)'고 규정하여 재제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재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재제시의 경우에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선적기일 또는 제시기일의 어떠한 기일도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재제시도 유효기일과 제시기일내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무적으로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익자는 조

52) eUCP, art, e12.

53) 전자거래에서 확보해야 하는 보안의 4요소는 진정성,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가 있다;오원석 외, 인터넷무역론, 법문사, 2000.p.60참조.

54) eUCP, art. e11; 이와 같이 서류 송달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UCP 500. 제16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55) eUCP, art, e11.

기에 제시를 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형되었는지의 판단기준으로는 은행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은행의 재량에 따라 사소한 변형의 경우에는 수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기록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불문하고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제시자 즉 수익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수신하는 정보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전자기록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에도 모든 위험부담을 수익자에게 지우는 것은 한편으로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은행 자체의 시스템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자기록의 변형이 초래되었다고 하면 그 전자기록의 변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수익자가 은행의 정보시스템의 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실무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에게 전자거래의 완전한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중한 것으로 판단된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보안의 확보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은행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무는 다 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은행의 전자기록 자체에 대한 면책규정은 기존의 UCP와 동일한 것으로, UCP 500 제15조에서도 은행은 서류의 형식이나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및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록의 보안측면에서 기밀성⁵⁷⁾의 확보에 대해서는 eUCP에서는 언급이 없다. 물론 전자기록의 무결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기밀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개설은행과 전자기록의 제시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 안전한 연계(safe links)가 없이는 신용장거래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⁵⁸⁾, 이러한 보안의 문제는 당사자간에 채택되는 전자결제시스템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6)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2001.2, p.93 ; 은행에게 서류의 안전성까지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은행이 참여하는 신용장제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57) 거래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8) James.G. Barnes & James E. Byrne, *op.cit.*, p.25.

Ⅲ. 주요 전자결제시스템과 eUCP와의 관계

1. Bolero Net과 eUCP

Bolero 프로젝트는 초기에 전자선하증권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무역에 이용되는 무역서류 전반에 걸친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Bolero 프로젝트는 신용장거래의 전자적 제시에 적용되는 eUCP와는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결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Bolero Net의 은행위원회는 eUCP에 포함되어 있는 12개의 조항이 Bolero Net의 메시징과 일치한다고 확인하고 있다⁵⁹⁾. Bolero Net에서는 eUCP XML GUIDE를 발표하여 Bolero가 eUCP를 가장 신속하게 적절히 수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Bolero시스템의 중심체계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무역거래 당사자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Bolero Net은 전자적인 정보의 교환에 의한 국제상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됨에 따라 전통적인 신용장제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자서류의 제시에서도 종이서류의 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된 서류의 제시에 대한 문제가 똑 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Bolero Net은 암호화(encryption)에 의해 의도된 수신자 이외의 누구도 전자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에 의해 서명된 전자서류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⁶⁰⁾. 또한 Bolero Net은 전자서류를 송부하고 난 뒤 수신자가 메시지를 다운로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송신자에게 메시지의 수령사실을 통지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⁶¹⁾ 때문에 전자서류의 수령여부에 대한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Bolero Net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eUCP에서 은행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록의 의견상 진정성 확보수준을 넘가하는 전자기록의 인증과 같은 보안의 문제를 해결

59) <http://www.bolero.net>(visited:2002.5.02)

60) <http://www.bolero.net>(visited:2002.5.1)

61) <http://www.bolero.net>(visited:2002.5.1)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Bolero Net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용장거래하에서의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해서는 eUCP의 적용이 적절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인터넷 네고와 eUCP

인터넷 네고는 수출대금결제에 필요한 각종 선적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의 결제를 받는 방식이다. 인터넷 네고를 이용하고자 하면 은행, 운송회사 및 보험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선적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으로 직접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이러한 선적서류를 출력하여 서류를 심사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넷 네고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전자적 기록의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네고는 외견상 전자적 기록의 제시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터넷 네고는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eUCP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에 eUCP를 인터넷 네고에 적용한다면 수익자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전자기록의 송신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매입은행에 제시완료의 통지를 해야 하며⁶²⁾, 은행의 시스템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첫 영업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⁶³⁾. 인터넷 네고에 eUCP를 적용함으로써 불명확했던 부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결제방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3. TradeCard와 eUCP

TradeCard는 처음부터 서류심사기능을 은행이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장없는 무역거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eUCP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62) eUCP, art. e5.c.

63) eUCP, art. e5.e

IV. 結論.

지금까지 신용장거래에서 기존의 종이서류의 제시를 대체할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해서 적용될 통일규칙인 eUCP와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는 수년동안 무역EDI에 대한 진전이 각국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무역분야에서의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실현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터넷의 보급확산이 이와 같은 전자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무역환경을 조성했다. 신용장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기록의 제시에 의한 매입(negotiation)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무역관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UCP신용장하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새로운 무역관습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에 의한 제시완료의 통지(the notice of completeness of presentation)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 매입에 필요한 전자기록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은행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송부되기 때문에 일괄제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을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 앞으로 제시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익자가 관련기관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실무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둘째, 매입단계에서 불일치 내용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과 신속한 재제시가 가능하게 되어 클린네고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조기에 제시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입화물선취보증제도(L/G)가 필요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기록의 제시는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의 전자기록의 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설은행 앞으로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하므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없이 개설은행은 수하인을 확인하고 대금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화물인도승낙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參 考 文 獻

- 강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검토, 무역상무연구, 2000.2
박석재, 사이버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00.8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 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2001.2.
오원석 외, 인터넷무역론, 법문사, 2000.
최준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2001.2
C. Reed, Legally binding Documents;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The International Lawyer*, Vol.35.No.1, 2001.
James G. Barnes & James E. Byrn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The International Lawyer*, Vol.35.No.1, 2001.
대한상공회의소 · ICC국내위원회, eUCP와 ICC신용장거래해석에 관한 설명회 자료, 2002.4.
UCP 500.
eUCP 원문
ISP 98.
전자거래기본법
ICC Document 470/941 rev2.
ICC Document 470/TA.529.
<http://www.bolero.net>.
eUCP XML GUIDE, Bolero .net.

ABSTRACT

A Study on the Electronic Trade and eUCP

Sung Chul-Park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developed new rule on th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 in L/C transactions. This rule named as the e-UCP. The gists of this article are on the application of e-UCP in practice and it's some problems. The e-UCP is the supplement of current existing UCP but is superior to UCP under some circumstances. The e-UCP is only apply to th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 regardless of type of L/C(for example, traditional paper L/C or electronic L/C). Th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 has some problems which has not seen in the presentation of paper document. These problems are Time, Place of presentation, and format of electronic record and so on. The e-UCP provide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s. However, the e-UCP has some obscure provisions on the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 and the corruption of electronic record.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rruption of electronic record by the virus on the system of bank ? The current e-UCP is not clear on this matter. We have to note followings in case of presenting the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applying the e-UCP. First, Beneficiary has additional duty to notice of completion of presentation. Second, It will be increasing the clean NEGOTIATION through prompt feedback of the discrepancy at the presenting time. Third, It is no use of L/G(Letter of Guarantee).

Key-words : e-UCP,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L/C